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95
----------	-------

발의연월일 : 2025. 9. 25.

발 의 자 : 최형두 · 박충권 · 성일종
서천호 · 이준석 · 김대식
강승규 · 김상훈 · 김성원
조정훈 · 박상웅 · 박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따라 시 · 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해당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주민 대표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실시되어 왔으나,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대립, 전문성 부족, 선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축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4조제2항 삭제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교육감의 선출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1. 주민의 선거

2.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의 동의를 받아 임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감의 자격 및 임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당선”을 “선출 또는 임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교육감후보자”를 “교육감후보자(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거의 교육감후보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교육감”을 “교육감(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교육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을 “교육감(제2호의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43조 중 “교육감”을 “교육감(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 중인 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교육감의 선출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1. 주민의 선거 2.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감의 자격 및 임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3조(겸직의 제한) ① (생략) ②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제23조(겸직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출 또는 임명----- ----- ----- -----.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 <u>교육감후보자</u> 가 되려는 사람은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 <u>교육감후보자</u> (제22조제1항제1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호에 따른 선거의 교육감후보자를 말한다)-----

-----.

<삭 제>

<u>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u>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① 주민은 <u>교육감</u>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③ (생략)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u>교육감</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 4. (생략) 제43조(선출) <u>교육감</u>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① ---- ----<u>교육감(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교육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u>교육감</u>(제2호의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에 한정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제43조(선출) <u>교육감(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u>-----.
---	---